

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021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9월 9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법령상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부 정의를 수정하고, 기타 상위계획과 중복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·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사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 (안 제2조제3항).
-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원계획으로 변경함(안 제5조).
-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 (안 제7조).

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재원을 마련해야 한다”를 “지원을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·설비를 설치·운영”을 “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”으로 하고, 제2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현장영상해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9조,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7조,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2. (생략) 3. “ <u>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사</u> ”란 제2호와 같이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이 가능하고 기술적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 4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서비스의 제공, 전문인력 양성, 장비 제공,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제5조(기본계획) ① 시장은 5년마다 <u>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<u>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</u> 2. <u>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</u> 3. <u>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,</u>	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<u>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</u>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<u>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

제 정 안	개 정 안
<u>추진계획에 관한 사항</u> <u>4.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</u> <u>5. 홍보에 관한 사항</u> <u>6. 그밖에 시장이 시각장애인 현</u> <u>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</u> <u>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</u> <u>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</u> <u>수립·시행을 위하여 시각장애인</u> <u>현장영상해설 관련 공공기관이나</u> <u>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</u> <u>수 있다.</u> 제6조(현장영상해설 지원) ① 시장 은 공공기관 등에 <u>현장영상해설을</u> <u>지원할 수 있는 시설·설비를 설치</u> <u>·운용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요</u> <u>공공기관에 관련 시설·설비를 설</u> <u>치·운영하도록 하며, 그 종류는 규</u> <u>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</u> <u>정한다.</u> <u>③ 공공기관 등은 행사 및 프로그</u> <u>램 진행 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</u> <u>해설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(이하</u>	제6조(현장영상해설 지원) ① ---- ----- <u>시각장애인 현장</u> <u>영상해설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</u> <u>서비스를 제공</u>-----. <u>② 시장은 현장영상해설을 위한</u> <u>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</u> <u>수 있다.</u> <u>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</u> <u>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</u> <u>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</u>

제 정 안	개 정 안
<u>“현장영상해설사”라고 한다)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시장은 현장영상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제7조(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 <u>1.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</u> <u>2. 현장영상해설사 양성, 보수교육 및 현장 배치 업무</u> <u>3.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관련 조사·연구·통계 업무</u> <u>4.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업</u> <u>5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	<u>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u> <u><삭 제></u>

제 정 안	개 정 안
<u>③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 <u>제8조(사업비 지원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,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u> <u>제9조 ~ 제11조 (생략)</u>	<u><삭 제></u> <u>제7조 ~ 제9조 (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)</u>

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시각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(Live Visual Description)”이란 일상생활, 박람회, 체육활동, 토론회, 등 다양한 행사 및 공간에서 시각장애인이 시각 정보를 음성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, 시각장애인과 같은 시점을 공유하며 방향, 감각적 표현, 객관적 묘사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해설 기법을 말한다.
3. “공공기관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·직속기관·출장소·사업소
 - 나. 서울특별시의회
 - 다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「서울

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, 이에 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서비스의 제공, 전문인력 양성, 장비 제공,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에 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현장영상해설 지원)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현장영상해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,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